

본 간행물에는 2020년 6월 10일자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.
웹페이지 nyc.gov/workers 도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

뉴욕시 다시 열기: 근로자가 알아 두어야 할 사항

2020년 6월 8일 월요일을 시작으로, 1 단계의 일부로서 뉴욕시의 다음 비즈니스는 재개장을 할 수 있습니다.

- 농업, 임업, 어업, 사냥업
- 건설업
- 제조업
- 소매업
매장 밖 또는 매장 내 픽업 또는 드롭오프 서비스만 가능
- 도매업

매장 밖 또는 매장 내 픽업 또는 드롭오프 서비스 전용으로 재개장하는 소매업에는 다음 항목을 판매하는 매장이 포함됩니다.

- 의류
- 전자 및 가전제품
- 화훼
- 가구 및 홈 퍼니싱
- 일반 상품
- 건강 및 개인 돌봄 제품
- 보석, 가방, 가죽 제품
- 잔디 및 정원용품
- 사무용품, 문구류, 선물류
- 신발
- 운동 기구, 취미 용품, 악기, 책
- 중고 제품

해당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경우, 아래는 고용주가 반드시 따라야 할 필수 사항입니다. 산업별 상세 지침은 forward.ny.gov 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.

고용주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사항 및 비즈니스 재개장 시 고려해야 하는 점

- 근무처의 잘 보이는 곳에 안전 계획을 게시해야 합니다.
- 매일 근로자 선별 절차를 시행해야 합니다. 아프다면 집에 머물러야 하며, 근무 중 아프다면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.
- 여러분과 동료들에게 얼굴 가리개를 무료로 제공하고 대체품을 제공해야 합니다. 타인에게서 최소한 6 피트(1.8m)의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, 이보다 가까워질 경우 얼굴 가리개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.
- 인력을 위한 손 위생 장소를 마련하고 유지해야 합니다. 여기에는 비누, 물, 페이퍼 타올을 비롯해 손을 씻을 수 없는 경우 알코올 함유량이 60% 이상인 손 소독제를 갖춘 구역이 포함됩니다.
- 공용 장비 및 자주 접촉하는 표면을 정기적으로 청소해야 합니다.
-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표지를 게시하거나 테이프 또는 다른 표식으로 서 있어야 하는 장소를 표시해야 합니다.
- 고객들이 6피트(1.8m) 이상 거리를 유지하지 않는다면 얼굴 가리개를 착용할 것을 요청합니다. 고객이 얼굴을 가리는 문제에 있어 고용주가 이보다 엄격한 규칙을 세웠을 수 있으며, 여기에는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는 이들에게 서비스를 거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.

직장 관련 법률

뉴욕시 소비자 및 근로자 보호부(Department of Consumer and Worker Protection, DCWP)에서는 [뉴욕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\(COVID-19\) 확산 방지를 위한 직장 내 법률에 관한 업데이트](#) 간행물을 제작했으며 nyc.gov/dcw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 간행물에는 COVID-19에 관련된 시, 주, 연방법의 개요를 포함한 병가에 대해 상세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. 아래는 추가 정보의 일부입니다.

COVID-19 양성 판정을 받거나 증상이 나타난 이후 직장으로 복귀	최신 지침은 웹사이트 nyc.gov/health 를 방문해 다음을 참고: 뉴욕시 다시 시작하기 지침은 산업별로 제공됩니다.
고용주용 COVID-19 유급 병가 서류(필수 격리 명령)	웹사이트 nyc.gov/health 를 방문해 다음 키워드 검색: 유급 병가 국장 명령 유급 병가 명령 FAQ
적절한 편의 / 차별 법률 (휴가 기간)	고용주에게는 뉴욕시 및 뉴욕주 인권법(Human Rights Laws) 및 미국 장애인법(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)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에게 적절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. 휴가 기간은 적절한 편의의 한 형태입니다. 이와 같은 차별법에서는 고용주가 유급 휴가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않지만, 고용주에게 과중한 부담이 야기되지 않는 이상 정책하에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무급 휴가보다 더 많은 기간을 허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(또한 가족 및 의료 휴가법(Family and Medical Leave Act)에 따라 그 이상이 요구됩니다). COVID-19 와 같은 질병을 가졌거나 가졌을지 모른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괴롭히는 것은 뉴욕시 인권법 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.

시 자료

근로자 보호 핫라인: 재개장, 직장에서의 건강 및 안전 지침에 관해 문의하거나, 재개장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고용주를 신고하려면 311 번 또는 1-212-436-0381 번으로 전화하세요.

nyc.gov/coronavirus 의 **COVID-19 시 전역 정보 포털** 시에서 제공하는 최신 업데이트 및 다음 정보를 받아보세요.

- [무료 COVID-19 검사](#)
- [COVID-19 증상 및 아플 때 취해야 하는 조치](#)
- [COVID-19 호텔 프로그램](#) (COVID-19 에 걸렸거나 혼자 집에 격리될 수 없는 동거인이 걸린 경우, 호텔에서 무료로 투숙할 수도 있습니다.)

무료 또는 저비용 의료 서비스: 311 번으로 전화해 문의하십시오.

NYC Well (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24 시간 기밀 보장)

- 1-888-NYC-WELL(1-888-692-9355)번으로 전화.
- 65173 번으로 "WELL"이라고 문자.
- 온라인 채팅 nyc.gov/nycwell